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05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가.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선진형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나.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 회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 (안 제3조)

- 새마을지도자 교육훈련(새마을중앙회 및 도지회 주관 교육)
  - 향토지구독
  - 국내외 선진지 견학
  -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
  - 상해보험 가입
  - 각종 새마을행사(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등 도단위 이상 행사) 참석
- 나. 용어,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2. 10. 19 ~ 11. 8(20일간), “제출의견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2항”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하”를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소요경비”를 “운영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필요한 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새마을지도자 교육 훈련(새마을중앙회 및 도지회 주관 교육)

제3조제1항제5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향토지 구독

### 6.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 7.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

### 8. 상해보험 가입

9. 각종 새마을행사(새마을지도자 전국 대회 등 도 단위 이상 행사) 참석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지원시”를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를 “받으려는 새마을운동조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여부에 대한”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등)”을 “(지원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조례에서”를 “조례로”로,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을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u>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u>」 제3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br/>-----<br/>----- 「<u>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u>」 제3조제2항-----<br/>-----<br/>-----.</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새마을운동조직</u>”이란 「<u>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평창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평창군협의회, 평창군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평창군지부를 말한다.</p> <p>2. (생략)</p> | <p>제2조(정의) -----<br/>----- 다음과 -----.</p> <p>1. “<u>새마을운동조직</u>”이란 「<u>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u>」(이하 -----<br/>-----<br/>-----<br/>-----<br/>-----<br/>-----<br/>-----.</p> <p>2. (현행과 같음)</p> |
| <p>제3조(지원)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소</p>   | <p>제3조(지원) ① -----<br/>-----<br/>----- 운<br/>영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p>  |

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

<신설>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지원시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새마을운동조직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필요한 경비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새마을지도자 교육 훈련(새마을중앙회 및 도지회 주관 교육)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향토지 구독

10. (현행 제5호와 같음)

6.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7.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

8. 상해보험 가입

9. 각종 새마을행사(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등도 단위 이상 행사) 참석

② -----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시 -----  
-----.

제4조(지원신청) ① -----  
----- 받으려는 새마을운동 조직은 -----  
-----.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등) (생략)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평창군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 지원 여부를  
-----  
-----.

제5조(사기진작 등) -----  
-----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 -- 조례로 -----  
-----  
-----  
-----  
----- 「평창군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  
-----.

<삭 제>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 비용발생 요인 》

- 평창군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향토지 보급
- 평창군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 관련조문 》

- 안 제3조(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원)

| 사업명     | 산출내역                 | 예산액        | 비고 |
|---------|----------------------|------------|----|
| 계       |                      | 74,400,000 |    |
| 향토지 구독  | 400명 × 13,000원 × 12월 | 62,400,000 |    |
| 상해보험 가입 | 400명 × 30,000원       | 12,000,000 |    |

### 나. 재원조달 방안

- 군비

## 3. 작성자

|     |                      |
|-----|----------------------|
| 작성자 | 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 연락처 | (033) 330 - 2210     |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br>(2013년) | 2차년도<br>(2014년) | 3차년도<br>(2015년) | 4차년도<br>(2016년) | 5차년도 이후<br>(2017년이후) | 계       |
|-----------------------|-----------------|-----------------|-----------------|-----------------|----------------------|---------|
| 세 입                   |                 |                 |                 |                 |                      |         |
| 세 출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372,000 |
| 향토지 구독                | 62,400          | 62,400          | 62,400          | 62,400          | 62,400               | 312,000 |
| 상해보험<br>가입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60,000  |
| 재원 조달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372,000 |
| 의<br>존<br>재<br>원      | 소 계             |                 |                 |                 |                      |         |
|                       | 보조금             |                 |                 |                 |                      |         |
|                       | 지방교<br>부세       |                 |                 |                 |                      |         |
|                       |                 |                 |                 |                 |                      |         |
| 자<br>체<br>수<br>입      | 소 계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372,000 |
|                       | 지방세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372,000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기 금                   |                 |                 |                 |                 |                      |         |
| 공기업<br>특별회계           |                 |                 |                 |                 |                      |         |
| 민간자본                  |                 |                 |                 |                 |                      |         |
| 해외자본                  |                 |                 |                 |                 |                      |         |
| 기타<br>(채무부담,<br>민자 등) |                 |                 |                 |                 |                      |         |
|                       |                 |                 |                 |                 |                      |         |

# 관계법령

##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